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2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. 20.(목)

검 토 안 건	발 의
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
검 토 보 고

(전문위원 김동원)

1. 검토안건

- 안전명 :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2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(복지정책과)
- 제출일 : 2022. 1. 7.
- 회부일 : 2022. 1. 10.(의안번호 : 22- 6)

3. 제출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

나. 민간위탁(재계약) 내용

1) 민간위탁기간 : 5년(2022. 7. 27. ~ 2027. 7.26.)

※ 최초 민간위탁일 : 1991년 7월 27일.

2)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3)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

-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일체
-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-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무일체

4)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 : 마포구 월드컵로 215 (성산동)
- 규모 : 2,210.66㎡ (성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시설 면적)
 - 건물자체 대지면적 1017.85㎡, 연면적 2,626.28㎡
 - 건물 내 관리사무소, 경로당 제외
- 층별현황
 - 본관 층별 현황

내용	면적(㎡)	실별구성	비고 (제외시설)
본관1층	622.88	다목적실, 성산누리어린이집, SH공사성산관리사무소, 로비, 화장실, 창고, 엘리베이터	관리사무소 209.54㎡
본관2층	486.66	방과후교실, 마포드림스타트센터, 백합경로당, 화장실, 로비	노인정 206.08㎡
본관3층	487.56	강당, 통합사무실, 행복한도서관, 경로식당, 엘리베이터, 화장실	
총면적	1,597.10㎡		

· 신관 층별 현황

구분	면적(㎡)	현황	비고
신관1층	350.07	통합사무실, 건강증진실, 프로그램실①, 로비, 화장실	
신관2층	329.04	프로그램실 ①②③, 전문상담센터, 창고, 화장실, 복도	
신관3층	350.07	프로그램실 ①②③④, 한부모가족센터, 중강당, 집단활동실, 화장실, 복도	
총면적	1,029.18㎡		

5)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(2022년 예산 기준)

- 소요예산 : 1,156,400천원(시비 1,141,841천원, 구비 14,559천원)

- 산출근거

[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(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)]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1,156,400		
운영비	1,107,870	- 기본인건비 982,830천원 - 운영비 105,060천원 - 비정규직종사자처우개선비 1,080천원 - 종사자포인트 6,900천원 - 시설개방 12,000천원	시비 1,107,870천원 (100%)
기능보강 사업비	48,530	- 본관 출입구 개보수 공사 32,650천원 (시비 22,855천원, 구비 9,795천원) - 내부 도장 공사 15,880천원 (시비 11,116천원, 구비 4,764천원)	시비 33,971천원 (70%) 구비 14,559천원 (30%)

다. 세부추진일정

-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: 2022. 2월
-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: 2022. 3월 ~ 2022. 5월
- 협약체결: 2022. 6월
- 위탁운영: 2022. 7월 ~ 2027. 7월(5년)

5. 관계법령

가.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나.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다.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6. 검토의견

- 본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무는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 34조 및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 제21조,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근거하여 1991년 7월 27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
-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제2항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,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(재위탁)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따라서, 본 재계약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.

※ 참고자료 : [관련법규]

[관련법규]

<사회복지사업법>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..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<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>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<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>

- 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